

2024년 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

「뷰티 디자인개발 과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화장품·뷰티 중소기업의 뷰티제품 사업화 및 제품고도화 실현을 통한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뷰티 디자인개발 과제’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5일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
- 세부과제 : 뷰티 디자인개발 과제
- 사업규모 : 26개사 지원, 총 350백만원(경기도)
- 지원기관 : 경기도,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 사업목적 : 도내 화장품·뷰티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기업·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매출 및 수출 증진 도모
- 지원내용 : 화장품·뷰티 제품 용기 및 부자재, 패키지디자인, 브랜드(BI, CI) 등 디자인개발 및 시제품제작 지원, 전문가컨설팅 지원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식약처에 등록된 화장품 중소기업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중 1개 이상 必)
 - * 화장품법 제2조 2항 참조
 - 지원 대상기업은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나, 개발 장소는 경기도 소재지에 한하여 지원
- 지원제외기업
 - 뷰티 제품·기술개발과제 관리지침(2024.03) 6조 가)항(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해당기업
 - 지원자격, 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중 기업, 국제·지방세 체납 기업, 부채비율 1,000% 이상,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기업

- * 단, 부채비율 및 자본잠식의 경우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선정평가(서면/대면 평가위원회, 현장평가 등)에서 지원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www.sbc.or.kr, ☎055-751-9000)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www.cracrv.com, ☎02-2071-1504~8)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유형자산, 장단기 차입금 항목)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주관단체의 요청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뷰티·화장품 관련 디자인개발비 및 시제품제작비 지원
- 지원기업: 총 26개사
- 지원기간: 2024년 5월(협약일) ~ 2024년 11월
- 지원금액: 디자인개발 직접비 최대 10,000천원 * 지원금의 20% 기업자부담(현금) 필수

선정등급	선정기업 수	지원금 (등급별 최대금액)	기업자부담금 (지원금의 20%)	총 사업비 (지원금+기업자부담금)
A	10개사	10,000천원	2,000천원	12,000천원
B	12개사	9,000천원	1,800천원	10,800천원
C	4개사	8,000천원	1,600천원	9,600천원

- * 신청기업 선정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등급별 예산조정
-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VAT)는 기업 별도부담

- 지원항목
 - 디자인개발비: 제품디자인(화장품용기,부자재 등), 패키지디자인, 브랜드(CI/BI) 개발 등 산업·시각디자인 관련 *디자인전문기업(외부) 디자인개발 용역비
 - * 홈페이지/브로슈어/리플렛 등 마케팅콘텐츠는 지원항목이 아님
 - * 디자인전문기업: 한국디자인진흥원(designfirm.kidp.or.kr)에 등록된 외부기업으로 한정
 - 시제품제작비: 디자인개발제품 목업(소프트워킹 등), 재료비, 외주제작비, 장비임차료 등 본사업으로 진행한 디자인개발 결과물 확인을 위한 시제품제작비(최소수량)
 - * 금형제작비는 기업부담금에 한하여 편성 가능
 - 전문가컨설팅: 경영/마케팅/특허/인증 분야 전문가매칭 컨설팅(기업별 1-2회, 희망분야 선택)

□ 추진일정(안) * 변동 가능

사업공고 및 접수	참여기업 선정평가		선정기업 협약체결	디자인개발 과제수행	중간점검 (현장)	참여기업 결과보고	최종평가
	1차 서면	2차 대면					
3/6 ~ 3/26	~4/15	~4/30	5월	5~11월	9~10월	12월 초	12월

4 선발방법

□ 선발내용 : 뷰티 디자인개발 과제 수행기업 26개사

□ 선발방법 : 외부전문가 심의위원회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 신청자격 요건 검토

- 기업 및 공장 소재지, 지원 제외사항, 사업계획서 필수 기재사항 등 적격 검토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른 법위반사항 검토

* 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적용법률 (4개 분야 11개 법)

(공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 (노동)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 (납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기타 세부내용 ‘2023-6(2023.1.11.),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변경 고시’ 참조

○ 1차 서면심사

- 평가자료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 평가내용 : 뷰티 디자인개발 과제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기업경쟁력, 사업계획 적정성, 기대효과 등 정성/정량항목 서면평가 *평가기준 불임 참조
- 선발기준 : 서면평가 6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 선발(40개사 이내)

○ 2차 대면심사

- 평가자료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평가내용 : 디자인개발 필요성, 개발계획 적정성, 예산 적정성 등 인터뷰 심사
* 기업별 10분 내외(사업계획서 중심 질의응답, 별도 PT발표 없음)
- 선발기준 : 대면평가 6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 최종 선발(26개사, 예비3개사)

○ 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 외부 심의위원회의 조정 의견 및 지원금 결정사항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및 기업자부담금 납부 확인 후 협약 체결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시 평가의견 등 조정이 어려울 경우 차순위 예비기업 선정

□ 신청기간: **공고일 ~ 2024년 3월 26일(화) 17시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jeb@gsmmba.kr)

□ 제출서류: 총 3개

- | | |
|----------------------------------|---------------------------|
| 1) 신청서류일체 - 구비서류(①~⑮) 통합본(PDF) | * 파일명: 신청서류일체_기업명.pdf |
| 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한글) | * 파일명: 사업계획서_기업명.hwp |
| 3) 법위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한글 또는 PDF) | * 파일명: 법위반동의서_기업명.hwp/pdf |

제출서류(파일형식)	구비서류 목록	제출구분
1. 신청서류일체 (PDF) 순서대로 병합한 통합본 1개파일	① [서식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필수
	② [서식2] 법위반 사실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
	③ [서식3]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약약서	필수
	④ [서식4]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필수
	⑤ [서식5]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필수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⑦ 식약처 등록 화장품기업 증빙서류: 1종 이상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확인서)	필수
	⑧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필수
	⑨ 국세 완납증명서	필수
	⑩ 지방세 완납증명서	필수
	⑪ 2023년 재무제표 * 공인회계법인 날인 필수, 23년도 자료 제출불가시 22년도 자료 제출	필수
	⑫ 공장등록증명원	선택 (해당시 제출)
	⑬ 기술력 증빙서류(특허, 실용신안, ISO인증 등)	선택 (해당시 제출)
	⑭ 기업인증서류(가점 증빙) *가점목록 붙임참조	선택 (해당시 제출)
	⑮ [서식6] 신규신청 확인서(가점 증빙)	선택 (해당시 제출)
2. 사업계획서 (한글)	① [서식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필수
3. 법위반동의서 (한글 또는 PDF)	② [서식2] 법위반 사실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

- 신청서류 중 필수서류 미비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필수기재사항 공란의 경우 선정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며, 기간 경과시 미제출로 간주함
- 접수 마감시간 이후 제출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본 사업의 신청, 사업 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해당기업 및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신청 제출서류일체 반환되지 않음
- 지원사업 참여기간 중 본사 및 공장이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원취소 또는 지원금 지급 불가
- 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신청 및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향후 경기도 지원사업에 대하여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담당/문의: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기업지원사업팀 조은별 과장

Tel. 031-8064-1089 / Mail. jeb@gsmba.kr / Homepage. www.gsmba.kr

【붙임1】 뷰티 디자인개발 과제 - 선정평가 기준

뷰티 디자인개발 과제 선정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요건 검토	자격요건 충족여부	1)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 적정성 2)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3) 지원제외기업 대상 적/부 확인	
	사업참여 제한여부	경기도 사업참여 제한여부(적/부)	
	법위반사실여부	법위반사실여부 조회·검토, 해당시 총점의 20% 감점 적용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 기준
1. 재무건전성 (15)	1.1.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5	100%미만(5), 100%이상~200%미만(3), 200%이상~300%미만(1) * 평가기준 미달 점수는 0점 부여
	1.2.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5	100%이상(5), 50%이상~100%미만(3), 0%이상~50%미만(1) * 평가기준 미달 점수는 0점 부여
	1.3. 매출액영업이익율 : 영업이익/매출액*100	5	10%이상(5), 5%이상~10%미만(3), 2%이상~5%미만(1) * 평가기준 미달 점수는 0점 부여
2. 기업경쟁력 (15)	2. 기업경쟁력 종합 : 추진조직 체계, 매출신장 가능성, 유사사업 추진실적	15	1) 수행조직 구성 적정성, 참여계획 타당성, 추진의지 등 2) 대내·외 시장규모, 매출시장크기, 사업화 전망 등 3) 마케팅 등 유사사업 수행이력 등
3. 사업계획 적정성 (40)	3.1. 디자인 개발 필요성	15	자사제품 사전분석 및 준비성, 디자인 개선·개발 필요 여부 등
	3.2. 디자인 개발계획 적정성	10	개발계획 적정성, 추진방법 체계성, 의뢰 기업 선정방법 적정성 등
	3.3. 디자인 개발과제 예산 적정성	15	사업비 예산편성 적정성 등
4. 기대효과 (30)	4.1. 사회적 기대효과	10	일자리 창출효과, 사회적 효과 우수성 등
	4.2. 경제적 기대효과	10	매출·수출 목표설정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
	4.3. 디자인개발 결과물 활용계획	10	디자인 개발 결과물 활용계획 적정성
합 계		100	
평가가점 (10)	기업인증	5	* [붙임2] 가점사항 해당 여부에 따라 최대 5점 부여
	신규 신청기업(최근3년 기준)	5	* [서식6] 신규신청 확인서 제출 필수, 해당시 5점 부여
총 계		110	

【붙임2】 뷰티 디자인개발 과제 - 선정평가 가점사항

구분	가점 사항	확인	가점
1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또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일학습병행 약정서,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서	1점
2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1점
3	ISO GMP 또는 식약처 GMP(CGMP) 인증 획득 기업	화장품GMP 인증서	1점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벤처기업 인증서	1점
5	경기도 수출프론티어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서	1점
6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1점
7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	1점
8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서	1점
9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서 10조 및 제11조 2항에 따른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1점
10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1점
11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3점
12	신규 신청기업 - 최근 3년간(2021~2023) ‘뷰티 디자인개발 과제’ 수혜 이력이 없는 기업	[서식6] 신규신청 확인서	5점

* 신청일 기준 가점사항 확인 가능한 제출서류 미비 혹은 유효한 서류가 아닐 경우 가점 불인정